

법령 코너

공산품 안전관리 최근 정보

제품안전과 전기사무관 박윤수
02)509-7412 parkys@ats.go.kr

1. 전기용품

□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기준(IEC)체제로 개편한 참고적용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국제규격 체계 전환에 따른 전기용품의 기술개발 및 무역촉진을 도모하고 전기기기용 스위치 등 분류품목 및 전자파적합성(EMC) 안전기준의 선택 적용시기를 연장하여 국제규격 체계전환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개정하여 2002.3.20부터 시행할 계획이다.

□ 동 운용요령을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참고적용 안전기준 추가 [별표 2] : 5개 기준
 - 분리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1)
 -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4)
 - 안전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6)
 - 자동변압기(단권변압기)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13)
 - 의료장소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(K 61558-2-15)
- 국제규격(IEC)과 일치화시킨 안전기준의 선택 적용시기 연장
 - 전기기기용스위치, 교류용전기기기 또는 전원용캐패시터,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, 절연변압기 (4개 분류품목) : 현행(2002.6.30) → 개정(2003.6.30)
 - 전선 및 전원코드, 전기용품보호용부품, 전동공구, 조명기기 (4개 분류품목) : 현행(2003.6.30) → 개정(2004.6.30)
- 전자파적합성(EMC) 기준 선택 적용시기 연장
 - 국제기준(IEC)과 일치화시킨 전자파적합성(EMC), 전자파장해(EMI) 및 전자파내성(EMS) 안전기준 : 현행(2003.6.30) → 개정(2004.6.30)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002. 3. 29.

기술표준원장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증개정

전기용품안전기준운용요령 제2조제2항의 [별표 2]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기준번호	제정일자	기 준 명	IEC(CISPR)규격	최종개정일
K 61558-2-1	2002.3.29	전력용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, 제2-1부:분리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	1997-02	
K 61558-2-4	2002.3.29	전력용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, 제2-4부: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	1997-02	
K 61558-2-6	2002.3.29	전력용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, 제2-6부:안전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	1997-02	
K 61558-2-13	2002.3.29	전력용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, 제2-13부:자동변압기(단권변압기)의 개별 요구사항	1999-10	
K 61558-2-15	2002.3.29	전력용변압기,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, 제2-15부:의료장소용절연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	1999-02	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전기용품안전기준 선택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) 제2조제1항의 제조구분별 ㉠01 내지 ㉠16 안전기준은 아래 기간까지 제2조제1항의 [별표1] 강제적용 안전기준과 선택 적용한다.

분류품목	선택응용시기
1. 전선 및 전원코드	2004. 6. 30
2. 전기기기용 스위치	2003. 6. 30
3.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	2003. 6. 30
4.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	2003. 6. 30
5.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	2004. 6. 30
6. 절연변압기	2003. 6. 30
8. 전동공구	2004. 6. 30
11. 조명기기	2004. 6. 30

③ (전자과적합성 기준 선택 적용시기에 대한 경과조치) 제7조의 제조구분별 ㉔01 내지 ㉔16 안전기준 및 부속서와 [별표 3]에서 정한 국제기준(IEC)과 일치화시킨 전자과적합성(EMC), 전자과장해(EMI) 및 전자과내성(EMS) 안전기준은 2004년6월30일까지 선택 적용하고, 2004년7월1일부터는 [별표3]을 적용한다.